



제429회국회(정기회)
제8차 국방위원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언론 공개〉

■ 성일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826호)

2025. 11.

국 방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덕 교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성일종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9. 9.
3. 회부연월일 : 2025. 9.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을 기피하는 경우 병역 기피자의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음.

그러나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에도 불구하고 병역기피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고, 병역기피자 공개인원도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병역이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언론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기피에 따른 불명예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1조의2제4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을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병역의무 기피자의 정보를 언론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2제4항 신설 등).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1조의2(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①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을 <u>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u> 다만, 질병, 수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의2(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① ----- ----- ----- ----- ----- <u>공개할</u> ----- ----- <u>.</u> ----- ----- ----- ----- ----- <u>.</u>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u><신설></u>	④ 제1항에 따른 공개는 병무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이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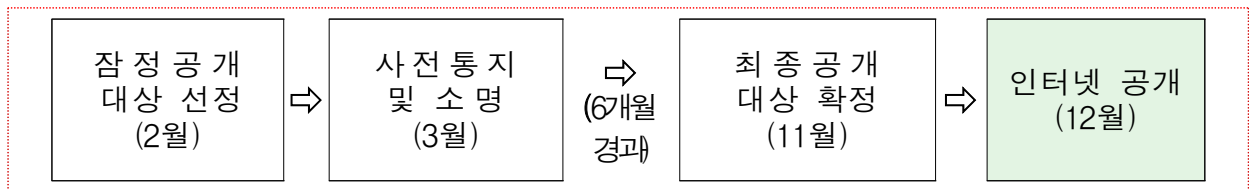
현행	개정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 사항, 공개 방법, 공개 절차 및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할 수 있다. ⑤ -----제4항----- ----- ----- ----- -----.

□ 「병역법」 1)에 따르면 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소집에 응하지 않거나 병역판정검사 등 각종 신체검사 수검에 응하지 않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을 지방병무청에 두는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1) 「병역법」 제81조의2(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①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질병, 수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이나 군사교육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기피·면탈 및 감면 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지방병무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잠정 공개 대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 등의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위원회로 하여금 잠정 공개 대상자의 병역의무 이행 상황을 고려하여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한 후 공개 대상자를 결정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 사항, 공개 방법, 공개 절차 및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매년 초 잠정 병역의무 기피 공개 대상자를 선정하여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 및 소명 절차를 거쳐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여부를 심의·결정하여 최종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을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음.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 공개 절차>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 현황>

(’25. 8. 31.현재, 단위 : 명)

공개일	최초 공개자						공개삭제 (의무이행 등)	현재 공개 중
	계	현역 입영	사회 복무	대체 복무	판정 검사	국외 체류		
’24.12.19.	422	147	41	1	31	202	79	343
’23.12.14.	355	109	46	2	23	175	131	224
’22.12.15.	281	80	29		32	140	129	152
’21.12.16.	342	92	30		30	190	167	175
’20.12.17.	256	118	26		25	87	175	81

□ 개정안은 현재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을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는 방식에 더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²⁾에 따른 언론이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언론”이란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 이 경우 병역기피 범죄를 예방하고 병역기피 범죄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되어 성실한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한 사회적 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함.

□ 참고로, 개정안의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언론 공개 관련 규정과 유사한 취지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의 정보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³⁾ 및 지방세 체납자의 정보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징수법」⁴⁾이 있음.

□ 국방부 및 병무청은 현재 병무청 홈페이지에 인적사항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있으나, 언론의 요청을 통해서도 해당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성실한 병역 의무 이행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다만, 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로 하고 있으나,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임을 고려할 때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명단 공개) ③ 제1항에 따른 공개는 성평등가족부 또는 이행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이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지방세징수법」 제11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④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 또는 공보 게재,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 지방세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 체납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문 의 처
02)6788-5307